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 번호 | 334 |
|----------|-----|

2011년 6월 24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년 6월 9일, 서울특별시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11년 6월 16일

다. 상정일자 : 2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1년 6월 24일 상정, 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총무담당 서기관 이규성)

가.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인력수요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1989. 08. 01자로 지방고용직공무원이 지방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 임용된 이후, 지방고용직공무원이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0700호, 2011. 05.23 일부개정) 개정으로 '고용직공무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성용)

- 동 조례는 1982. 02. 09 제정되어 총 3차례의 개정을 하였음.
- 동 조례가 규정하는 '고용직공무원 제도'는 지난 1950년 시작됐으나, 그 동안 정부의 인력수요 변화에 따라 일부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되었고, 사환으로 불리던 경노무고용직도 2005년 이후 사라져 유명무실한 상황임.

- 현대의 행정업무가 점차 전산화·기계화되고 행정보조 업무의 민간위탁이 확대됨에 따라, 급사·사환·청소 등 행정보조 업무를 담당했던 고용직공무원 제도가 전격 폐지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0700호, 2011. 05. 23 일부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직공무원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현실에 부합하는 타당한 조치라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